

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서비스사업

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

산업통상자원부, 포항시와 (재)포항테크노파크는 이차전지 및 유망산업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이차전지 산업 초기 진출을 위하여 「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」 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9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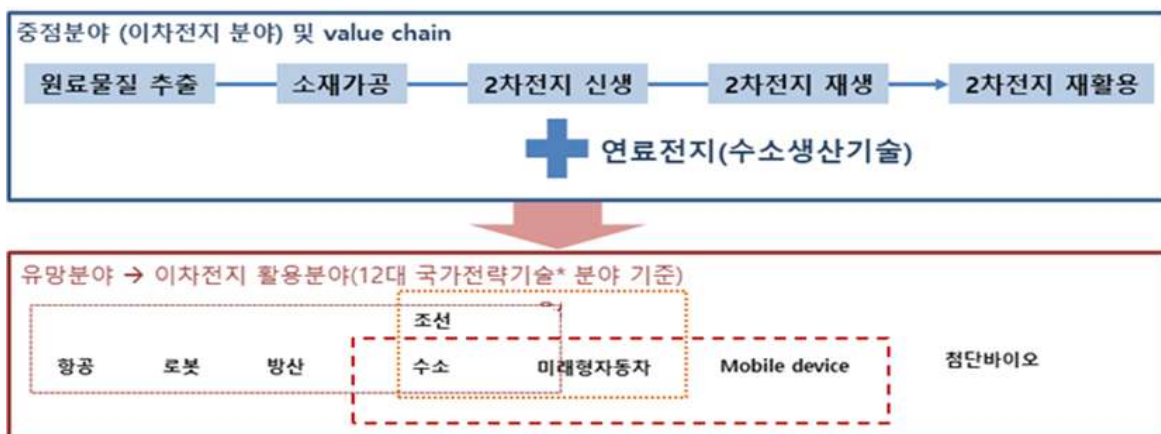
(재)포항테크노파크 원장

I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5년 국가기술거래플랫폼 기술이전사업화지원사업
- 나. 지원목적 : 이차전지 및 이차전지 전후방 유망산업 기술을 이전한 기업의 초기사업화 달성을 통한 이차전지 산업 초기기업 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 활성화
- 다.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5년 11월 30일
- 라. 지원내용 : 도입기술의 사업화달성을 위한 시제품제작, 성능개선, 시험·인증 지원
- 마. 지원규모 : 3개사 내외, 기업당 최대 12백만원(기업부담금 10%이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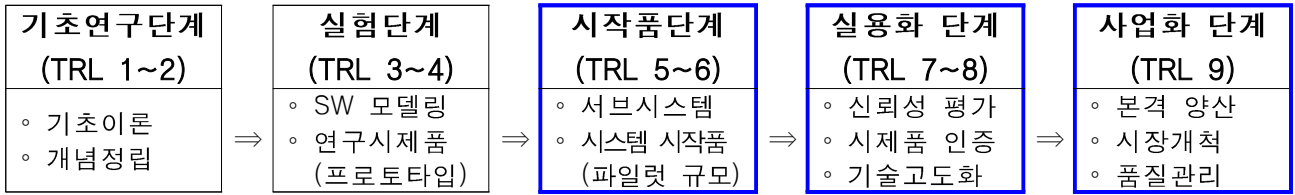
II 지원대상

- 가. 지원대상 : 2022년 4월 이후 기술이전을 통해 이차전지·유망기술을 도입하였거나 2025년 11월말까지 기술도입을 완료 할 기업으로, 포항지역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, 지사)을 보유한 기업
- (*) 유망산업 분야 ⇒ 이차전지를 활용한 첨단바이오, 로봇, Mobile device, 수소, 조선, 방산, 항공산업



※ 기술이전 예정기업의 경우, 기술이전 협약서 제출 필수, 추후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必

나. 지원자격 : 기술성숙도(TRL) 5단계 이상의 기술을 시제품·실용화·사업화 하고자 하는 과제



※ 기술성숙도(TRL: Technology Readiness Level) 핵심요소기술의 성숙도에 대한 단계별 정의를 내려 기술개발 단계를 1부터 9까지 표현

III 지원내용

가. 지원유형

구분	시작품 단계 (TRL 5~6)	실용화 단계 (TRL 7~8)	사업화 단계 (TRL 9)
목적	이전 기술을 적용한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	신뢰성 평가 및 인증, 제품고도화	양산 및 시장개척
지원금액	최대 12,000천원(VAT포함) ※ 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		
기업부담금	총 사업비의 10% 이상 (VAT제외 기준)		
지원유형	패키지 지원 가능		
지원형태	기술지원		
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지원프로그램별 도입기술 적용 필수 ◦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◦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 (인건비, 간접비, 회의비, 출장비 등 운영비성 경비는 불인정) ◦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,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“성공” 시 사업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, 공급업체에 직접지급(※간접지원 방식) -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하여 사업 수행 		

나. 지원프로그램

No.	프로그램	지원한도	내 용	기업 부담금
1	시제품제작	12,000천원	신제품 제작 지원 (설계, 개발, 제작 등)	총사업비의 10% 이상 (VAT 제외)
2	제품고급화	12,000천원	기존제품 기능추가, 성능개선 등 (공정개선 제외)	

※ 지원 결과 제출시, 이전된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공급기관의 확인서 발급 필요

다. (부담금 산출 예시) 총 사업비가 VAT를 포함해 13,500천원일 경우,

-> 지원금 : 12,000천원(VAT포함), 기업부담금 : 1,500천원(VAT포함)

* 기업부담금에서 VAT(136,364원)를 제외한 순수 부담금은 1,363,636원이며, 이는 VAT제외 총사업비인 12,272,727원의 **11.11%**에 해당하여, 「총사업비의 10% 이상」이라는 기준을 충족.

라. 기업지원금 지급

- 사업비 지급방식 : 간접지원, 포함TP →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
- 사업비는 결과평가 후 지급하며, 공급기업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
단, 시험·인증은 담당자와 협의 후 선 지급 후 예산 대체 가능
- 최종 결과평가 후 목표를 미달성했다고 보일 경우(불성실수행)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지원금은 부가세(VAT)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의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부담

IV 지원절차



※ 상기 절차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

V

선정평가 및 결과평가

가. 선정평가 : 서면평가

-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, 지원 필요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, 기대효과 등
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및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
- 선정기준 : 105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 기업 중 높은 점수 순서대로 차등 지원
 - ※ 지원의 필요성(35점), 계획의 적정성(35점), 사업화 가능성 및 기대효과(30점)

나. 결과평가 : 서면평가

- 사업 기간종료 후 20일 이내 시행
- 사업계획서 상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
- 사업수행의 성실도 및 성과 달성도, 지원의 기대효과 등
 - 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확정

VI

신청 및 접수

가. 접수기간 : 모집 공고일 ~ 09.30.(화)까지

나.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(사업 공고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)

다. 제출서류

구분	제출서류
신청기업	① 사업신청서(사업계획서)
	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
	③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
	④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
	⑤ 사업자등록증
	⑥ 최근 3년(22, 23, 24년) 재무제표
	⑦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(23, 24, 25년)
	⑧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
	⑨ 기술이전 계약서, 기술이전 계약 전인 기업은 기술이전 협약서
	(선택) 지재권 및 인증서류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비즈 등
	(선택) 기업 및 제품, 기술 홍보자료
공급기업	① 사업자등록증
	②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별 세부 견적서(VAT 제외)
	③ 공급기업 자격요건 확인서
유의사항	각각의 파일에 연번을 붙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

Ⅶ 유의 사항

가. 지원제외 대상

-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·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지원기업 및 지원기업의 대표 또는 공급자 및 공급자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·정산금·환수금 납부 등) 불이행 중인 경우
-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/ 민사 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/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/ 휴·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/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 전액잠식
- 직전년도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 감사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 인 경우
-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되는 경우
- 기술이전계약서 계약내용 미이행 기업
-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나. 기타 유의사항

- 선정평가 전 서류적격여부 사전검토(필요시 현장방문을 실시)
- 지원기업이 다수인 경우 기술거래 금액이 높은 기술을 우선지원 할 수 있음
- 선정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
-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포항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 필수
※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가능
- 협약기간 내 과제수행을 완료하고 협약종료 후 14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에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(지출증빙)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
-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
- TP 지원금의 부당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,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

Ⅶ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전략사업본부	김효진 대리	054-223-2154	khj0907@ptp.or.kr